
정책참고자료

2019-19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목 차



1 행정안전부

2019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8개소 선정	4
- 전국 시·도 및 시·도교육청 추천 받아 -	

2 국민권익위원회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에게도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해야	14
- 국민권익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위탁가정 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 권고 -	

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중견기업 스마트공장 모범사례 견학하러 오세요.	17
- 제1차 시범공장(시범 스마트공장) 현장 공개 -	

4 교육부

학생부종합전형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	22
-------------------------------	----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인 미디어 창작자 양성 지원센터 ·1인 미디어 팩토리 개소	25
- 1인 미디어 지원사업 추진 및 산업동향 전달 전담기구 마련 -	

6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체육시설 65개소에 스포츠 휠체어 170대 보급	27
- 국민이 직접 제안·심사·기획하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지원 -	

7 농림축산식품부

원산지 표시방법 및 위반업체 정보 이제는 실시간으로 확인!	31
- 10월 15일부터 원산지 표시 정착 및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제공 -	

8 환경부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제도 보완한다	35
---------------------------------	----

9 고용노동부

지역주도! 성과중심! 2020년 지역 고용정책 방향 논의 _____ 42

-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정책 종합워크숍」 개최 -

10 여성가족부

“경력 잇기에 노력하는 당신, 우리 모두가 응원합니다.” _____ 55

- 도서벽지 거주 주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특별 실시 -

11 국토교통부

도로 안전성 제고를 위해 전국 모든 도로 일제 점검보수한다 _____ 60

- 도로포장, 안전시설, 도로표지 등 일제 정비 -

12 해양수산부

해수부, 태풍 ‘링링’ 피해 어가 경영안정 지원 _____ 63

- 긴급경영안정자금 24억 원 배정, 수협에서 대출신청 가능 -

2019년 우수 어린이놀이기구 8개소 선정

- 전국 시·도 및 시·도교육청 추천 받아 -

< 2019년 우수 어린이 놀이기구 선정 사례 >

- ▶ **(춘천 꿈자람 어린이공원 놀이터)** 놀이기구 안전 및 놀이지도를 위한 안전요원이 상주하고 있고 청소 및 청결상태가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 특히 대형 조합놀이대*, 공중놀이 기구 등 아이들의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놀이기구를 조화롭게 배치하였다. 자연환경과 친화성을 높이기 위해 주변에 잔디, 나무(휴게공간)를 조성해 학부모와 어린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미끄럼틀, 건너는 기구 등 두 가지 이상의 놀이기구가 결합된 형태의 놀이기구

- ▶ **(여수 동동공원 아이나래 놀이터)** 안전사고 예방 및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놀이활동가, 놀이전문가를 배치했으며, 놀이기구 내 화장실, 수유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이순신 장군을 테마로 바다가 보이는 공원에 놀이공간이 조성돼 환경이 쾌적하고, 윷놀이, 투호놀이, 뽕따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어린이부터 시민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안전한 어린이 놀이기구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 전국 7만5,000여개 어린이 놀이기구 중 시·도 및 시·도 교육청에서 추천한 시설 50곳을 대상으로 5개 분야* 20개 항목을 평가하여 '2019년 우수 어린이놀이기구' 최종 8개소**를 선정했다.

* 안전관리, 유지관리·운영실태, 아동발달과의 연계성, 안심디자인·설계, 공동체 활성화

** ▲문화공원 2지구 놀이터(인천 연수구) ▲에그리나어린이집 놀이터 A(세종시)
▲걸포중앙공원 모험놀이터(경기 김포시) ▲제1호 오산 꿈놀이터(경기 오산시)
▲꿈자람 어린이공원(강원 춘천시) ▲제37호 어린이공원 용푸름 놀이터(충남 아산시)

▲도통 어린이공원 워터파크(전북 남원시) ▲동동공원 아이나래 놀이터(전남 여수시)

-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창의적인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총 74개소가 선정됐다.

<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선정 현황 >

연도	합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개소	74	16	20	-	7	7	9	7	8

- 이번에 선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인증서와 인증판이 수여되고, 향후 3년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서 지위가 유지된다.
-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안전관리 의무위반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설 지정을 취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 조상명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어 놀 수 있는 놀이 공간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연번	시설명	주요내용 및 관련 사진
1	문화공원 2지구 놀이터 (인천 연수구)	○ 놀이기구의 관리상태가 우수하며 안전표지판 및 이용수칙 등이 잘 게시되어 있음 ○ 청소 및 청결상태가 아주 양호하며 놀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외부공간과 차단되어 있어 안전하게 놀이를 즐길 수 있음 ○ 친환경 소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색채성, 시각성 등 감성과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형상의 조형물 및 기구로 구성 ○ 다수의 종합놀이기구 및 기차 테마놀이가 가능하도록 여러 종류의 놀이기구 설치 ○ 보호자가 앉을 수 있는 공간 및 다양한 세대가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구성됨 

연번	시설명	주요내용 및 관련 사진
2	예그리나 어린이집 놀이터 A (세종시)	○ 어린이들에게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안전수칙 등을 독립된 놀이공간별로 제공 ○ 안전 픽토그램 및 아이들이 직접 작성한 안전수칙 그림 등을 부착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시설 전반적으로 관리 및 청결상태가 양호하며, 안전점검 일지 등 안전관리 기록상태가 우수 ○ 다양한 놀이기구 설치 및 자연친화적인 놀이환경으로 구성 ○ 연령별 적합한 놀이기구를 포함해 그늘막, 텃밭체험, 교통 안전 놀이, 모래놀이 등 창의적인 놀이를 할 수 있는 환경 제공    

연번	시설명	주요내용 및 관련 사진
3	걸포중앙공원 모험놀이터 (경기 김포시)	○ 전체적인 놀이기구의 관리상태가 양호하며 CCTV를 설치하여 시설 내에서 놀이 활동 관찰이 용이 ○ 청소 및 청결상태가 아주 양호하고 안전표지판 및 이용수칙 등이 잘 게시되어 있으며 충격흡수용표면재(모래) 관리상태가 양호 ○ 산책로, 수목공원, 수경시설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어 영유아에서 성인까지 모든 연령대가 이용 가능한 휴게 공간임 ○ 보호자가 앉을 수 있는 공간 제공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구성    

연번	시설명	주요내용 및 관련 사진
4	제1호 오산 꿈놀이터 (경기 오산시)	○ 전체적인 놀이기구의 관리상태가 양호하며 CCTV 설치되어 놀이 활동 관찰이 용이함 ○ 조합놀이대, 공중놀이기구, 독립미끄럼틀 등 창의적인 놀이가 가능한 기구들로 구성되어 있음 ○ 보호자가 앉을 수 있는 공간(벤치, 휴게데크시설 등) 및 다양한 세대가 함께 놀이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구성됨 ○ 색채 및 시각성적 측면에서 감성과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형상의 조형물 및 기구들로 구성되어 있음    

연번	시설명	주요내용 및 관련 사진
5	꿈자람 어린이공원 (강원 춘천시)	○ 놀이안전 및 놀이지도를 위한 안전관리 인력이 상주 ○ 대형 조합놀이대, 공중놀이기구, 대형 건너는기구, 대형 오르는 기구, 기타 기구 등을 제공하여 흥미로운 놀이 활동이 가능 ○ 색채 및 시각적 측면에서 감성과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형상의 기구들로 구성되어 있음 ○ 수목공간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어 영유아에서 성인까지 모든 연령대가 이용이 가능한 휴식 공간 제공    

연번	시설명	주요내용 및 관련 사진
6	제37호 어린이공원 용푸름놀이터 (충남 아산시)	○ 안전표지판 및 이용수칙 등이 게시되어 있으며 충격흡수를 위한 양질의 모래바닥이 설치되어 있고 관리상태도 아주 양호함 ○ 유지관리 상태가 양호하고 CCTV 설치로 어린이놀이시설 관찰이 용이함 ○ 다양한 기능의 조합놀이대, 오르는기구, 언덕, 수정시설 등 창의적인 놀이가 가능한 기구들로 구성 ○ 고급소재의 놀이기구로 색채 및 시각적 측면에서 감성과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형상의 기구들로 구성되어 있음 ○ 보호자가 앉을 수 있는 공간 및 모든 연령대가 함께 놀이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구성됨    

연번	시설명	주요내용 및 관련 사진
7	도통 어린이공원 워터파크 (전북 남원시)	○ 별도의 이용 안전 홍보 및 평시 응급처치 상시/매뉴얼 구비 ○ 물이용 조합놀이대, 미니버켓, 기타물이용기구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가 가능한 기구들로 구성 ○ 각종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정보 및 비상연락망 제공 우수 ○ 물이용놀이시설 기계실이 놀이터와 격리되어, 감전 등으로부터 안전이 확보됨 ○ 파라솔, 테이블,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가족단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됨    

연번	시설명	주요내용 및 관련 사진
8	동동공원 아이나래 놀이터 (전남 여수시)	○ 주변 위해요인들이 효율적으로 차단된 열린공간으로 설계되고, 자연적 차광시설 등이 우수함 ○ 놀이시설 내 비석치기, 술방울 던지기, 이순신 성곽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이용객들의 호응이 좋음 ○ 바다가 보이는 공원 내에 놀이시설을 조성해 주변환경이 쾌적하고 모든 연령대가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놀이시설 내 화장실, 휴게쉼터, 수유실, 관리사무소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음 ○ 이순신 장군을 테마로 놀이터가 조성되고 공중놀이기구, 그네, 오르는기구 등 다양한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어린이들이 호기심과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에게도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해야

- 국민권익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위탁가정 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 권고 -

-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에게도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발급되는 등 위탁가정에 대한 복지혜택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장애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위탁부모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위탁가정 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망이나 실종, 학대 등으로 해당 아동이 정상적으로 양육될 수 없게 된 경우 복지시설이 아닌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동안 양육을 위탁하는 제도이다. 2017년 기준 위탁아동은 11,975명, 평균 위탁기간은 5년 9개월이다.

- 그러나, 위탁가정의 경우 실제로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있더라도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고 주민등록 상 동거인으로 표기된다는

이유로 여러 복지 지원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장애아동을 위탁해 양육하고 있더라도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없어 장애아동의 병원 진료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 돌도 되지 않은 아동을 위탁받아 5년째 양육하던 중, 위탁아동이 뇌병변장애 1급 판정을 받았음. 위탁아동과의 외출이 쉽지 않아 자가용을 주로 이용하지만,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 차량 표지가 발급받지 못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어** 매번 불편을 경험 (2019.1. 위탁부모 면담)
- 거동이 불편한 어린 청소년을 보살피고 있는 위탁부모가 병원에 동행할 경우 장애인 주차공간에 주차할 수 없어 **승하차 시 공간 확보 등 많은 불편**이 있음 (2019.7. 국민신문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및 부모에게 장난감을 빌려주거나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의 경우 친부모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 8개월 아기의 입양을 전제로 위탁받아 양육중인 위탁가정으로서 놀잇감 대여 등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회원 가입하고자 하였으나 **부모자녀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당함** (2018.7, 국민신문고)
- □□육아지원센터에서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니 아동과 가족관계로 되어 있지 않고 **동거인으로 되어 이용할 수 없다고 함** (2017.12, 국민신문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교통, 의료,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 혜택을 주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하고 있는데 다자녀가구를

정하는 ‘자녀’의 범위에 위탁아동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다.

-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장애아동을 양육중인 위탁부모에게도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위탁부모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또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대상인 다자녀 가구의 ‘자녀’ 범위에 위탁아동을 포함시키도록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아울러, 위탁기간이 종결된 후에도 위탁가정이 부정하게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위탁이 종료되면 발급받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나 다자녀 우대카드를 반납하도록 하고, 위탁가정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부서에서는 가정위탁이 종결된 사실을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부서에 통보하는 등 관리체계를 마련토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위탁부모·아동이 각종 지원정책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 스마트공장 모범사례 견학하러 오세요

- 제1차 시범공장(시범 스마트공장) 현장 공개 -

“스마트공장 모범사례 견학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 임직원이면 누구나 시범공장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일 ‘제1차 시범공장 견학 행사’를 진행하며 스마트공장 도입을 원하거나 수준 고도화를 고려하고 있는 중소·중견 기업인 누구나 홈페이지 신청 후 방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범공장은 스마트공장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실제 공장에 모델 하우스처럼 구축한 스마트공장 모범사례이다.

중기부는 스마트공장을 방문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본보기상(롤 모델)을 만들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2018년도부터 시범 공장을 구축해 왔다.

< 제1차 시범공장 견학행사 개요 >

- ▶ (일시/장소) '19. 10. 1(화) 10:30~11:30, (주)진합 3층 대회의실
- ▶ (참석)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장, 견학 희망기업 등 총 20명 내외
- ▶ (주요일정) 기업소개(스마트공장 구축 현황 등), 공장견학 등

이번 행사는 사전에 견학을 신청한 19명의 기업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주)진합(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서로 42, 중견기업)에서 진행됐다.

(주)진합은 작년 중기부에서 지원한 ‘시범공장 구축사업’을 수행하면서 최고수준(레벨 4)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생산성 20.5% 증가, 불량률 감소 50% 등의 경쟁력 향상효과를 실현하고, 고용도 ‘17년도 518명에서 올해 605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스마트 공장의 본보기상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우수한 기업이다.

올해는 2018년도에 지원받은 13개 중소·중견기업을 방문할 수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는 전국에 있는 총 51개의 시범공장이 문을 열 계획으로 견학을 원하는 기업인들은 보다 다양한 업종의 스마트공장을 찾아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조만간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중기부 김영태 기술혁신정책관은 “(주)진합은 스마트공장 고도화 수준이 높아 이미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이 방문해도 배울 것이 많을 것” 이라고 말하고,

“중소·중견기업의 눈높이에 맞게 구축된 시범공장이 민간 중심의 스마트공장 확산 분위기의 핵심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범공장 견학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견학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및 지역 스마트제조혁신센터(TP)에 문의하면 된다.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 홍보관 → 견학공지

□ 추진 목적

- 시범공장 견학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 공장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벤치마킹 기회 제공

□ 행사 개요

- 일시 : 2019. 10. 1.(화) 10:30 ~ 11:30
- 장소 : (주)진합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서로 42)
- 참석대상 :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장, 견학 희망기업 등 총 20명 내외

□ 추진 일정

시 간	세부 내용			비 고
10:30~11:25 (55')	5'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 인사말씀	(주)진합 3층 대회의실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
	5	(주)진합 사장 환영인사		(주)진합
	20'	기업소개 * 스마트공장 구축 현황 등		
	25'	공장견학	견학 현장	(주)진합
11:25~11:30 (5')	기념촬영			

붙임2

시범공장 구축기업 현황

□ 구축현황 : ('18년) 13개 기업

- 구축 수준 : (Lv 4) 5개, (Lv 3) 8개

번호	기업명	주생산품	소재지	구축 수준	견학 가능시기
1	진합	금속파스터 및 나사제품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서로 42	Lv 4	10월초
2	태양 금속공업	볼트, 너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봉로 212	Lv 4	10월중
3	인탑스	휴대폰, 램프, 화장품	경북 구미시 옥계2 공단로 148	Lv 3	10월중
4	대우 전자부품	전기차용 배터리충전기, PTC히터, 냉각수 히터	전라북도 정읍시 공단2길 3 망제동	Lv 3	10월중
5	디케이	생활가전 부품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360	Lv 4	10월중
6	파나시아	선박평형수처리 설비, 탈황설비, 선박계측장비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3로 55	Lv 3	10월중
7	용흥산업	에어콘모듈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테크노중앙대로 110	Lv 3	10월중
8	프론텍	자용차용 용접 너트, 타이어교체용 자키	경기도 시흥시 희망공원로 64	Lv 4	10월중
9	진양 특수강	열연봉강	경상북도 영천시 담뜰길 124-9	Lv 3	10월중
10	연우	화장품 용기	인천광역시 서구 가재울로 56 패키지센터	Lv 3	10월중
11	동양에이 케이코리아	알루미늄 주조재 압출재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원합강1길 70	Lv 4	11월초
12	휴온스	내용고형제, 점안제 및 주사제 의약품	충청북도 제천시 바이오밸리로 100	Lv 3	10월중
13	티앤지 * 전북TP 직접관리	조향 및 현가장치 부품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444-11	Lv 3	10월중

번호	소 속	담당자	연락처	비 고
1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이경아	042-388-0876	
2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김소정	042-388-0878	
3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임인근	042-388-0861	
4	서울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임효성	02-944-6057	
5	부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이문기	051-974-9155	
6	대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박진희	053-602-1861	
7	경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김종범	053-819-3058	
8	포항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김현철	054-223-2242	
9	광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김선일	062-602-7011	
10	전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박창진	061-729-2831	
11	제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이행철	064-720-3074	
12	경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임충우	031-500-3649	
13	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정보윤	031-539-5143	
14	인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정아라	032-260-0629	
15	대전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오소영	042-930-4351	
16	충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유흥열	041-589-0705	
17	세종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승효진	044-850-2153	
18	울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손선천	052-219-6675	
19	강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김철회	033-248-5687	
20	충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신병섭	043-270-2334	
21	전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유철우	063-832-6051	
22	경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김태현	1811-8297	

2019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체험수기 공모전 개최

- ◆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확대에 기여한 감동적인 체험사례 발굴
- ◆ 체험수기 접수 10월 7일(월)부터 11월 6일(수)까지 진행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윤여각)은
‘2019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체험수기 공모전 개요

- ❖ (접수 / 발표) 2019년 10월 7일(월)~11월 6일(수) / 2019년 11월 말
- ❖ (분야) 학생·학부모, 도우미, 교원 등 각 대상자의 체험수기
- ❖ (대상) 2018년~2019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사업에 참여한 학생·학부모, 도우미, 교원 등
- ❖ (시상)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3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13편(총 16편)

-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은 장애를 가진 대학생의 학교생활을 돕거나 수화·속기 등과 같은 학습을 보조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도우미를 지원하는 것으로 2005년부터 운영해왔다.
- 체험수기 공모를 통해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대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널리 공유하고 있다.

□ 이번 공모전에서는 대상 3명, 최우수상 3명, 우수상 10명 등 총 16명의 수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12월에 예정된 2019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성과공유회에서 시상과 함께 수상 사례를 발표한다.

○ 아울러, 우수사례가 대학 현장에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 공모전 접수는 10월 7일(월)부터 11월 6일(수)까지 진행되고,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2018년~2019년)에 참여한 장애대학생과 학부모, 장애대학생 도우미, 교원 및 지원담당자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 신청을 원하는 장애대학생, 도우미, 교원 등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자신들의 소중한 경험을 수기형태로 작성하여 전자우편(usd@nile.or.kr)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nile.or.kr) 공지사항에 서식 첨부

※ 기관추천은 추천서와 신청서 양식 작성 후 공문 (수신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이메일(usd@nile.or.kr) 제출

【붙임】 2019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체험수기 공모전 추진 계획

붙임3

2019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체험수기 공모전 추진 계획

- ☐ (주최/주관)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 ☐ (시상내역) 대상(부총리겸 교육부장관상) 총3점,
최우수상 및 우수상(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총13점

<2019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체험수기 공모전 세부내역>

구분	장애대학생	장애대학생 도우미	장애대학생 지원담당자
기본자격 및 대상	장애대학생도우미지원 사업(2018, 2019년도)을 통해 지원 받은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	장애대학생도우미지원사업(2018, 2019년도)을 통해 활동한 도우미(일반, 전문, 원격도우미)	장애대학생도우미지원사업(2018, 2019년도) 참여대학 소속으로 장애대학생을 직접 지도 했거나(하고 있는) 교원(강사포함) 및 장애대학생 지원 업무담당자
시상내역			
▪대상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상 3점 / (상금) 각 70만원		
▪최우수상	주관기관장상 3점 / (상금) 각 50만원		
▪우수상	주관기관장상 10점 / (상금) 각 30만원		

- ☐ (접수기간) 2019년 10월 7일 ~ 11월 6일
- ☐ 신청방법
 1. 신청자 직접 신청
 - (신청서식 다운로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nile.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접수방법) 신청서식에 맞춰 작성 후 이메일(usd@nile.or.kr) 접수
 2. 기관 추천
 - (추천 가능 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 평생교육법 제31조 및 제33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해 설치된 대학
 - (추천방법) 추천기관에서 추천서와 신청서 양식 작성 후 추천 기관 대표자 공문 제출
 - (접수방법) 신청서식에 맞춰 작성 후 공문과 이메일(usd@nile.or.kr) 접수
- ☐ (문의처) 02-3780-9873, 9941 / usd@nile.or.kr
- ☐ (시상식) 2019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성과공유회(12월예정)

1인 미디어 창작자 양성 지원센터·1인 미디어 팩토리 개소

- 1인 미디어 지원사업 추진 및 산업동향 전달 전담기구 마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인 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해 10월 29일(화)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하현회)에 1인 미디어 전주기 지원 전담기구인 '1인 미디어 창작자 양성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서석진)의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내 '1인 미디어 팩토리' 개방을 기념하는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 1인 미디어 창작자 양성 지원센터는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안」(19.8월 발표)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설치되는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구로서, 1인 미디어 창작자들에게 국내·외 1인 미디어 산업의 동향을 전달하고 정부의 지원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과기정통부는 1인 미디어 창작자 양성 지원센터를 통해 콘텐츠 제작지원과 전문교육·멘토링 등으로 역량 있는 신예 창작자를 발굴·육성하고, 사업화 및 유통지원, 해외진출까지 단계별 지원 정책도 제공할 예정이다.
 - 특히 내년부터는 거점 지역별 콘텐츠 공모전을 운영하여 1인 미디어 창작자 발굴 규모를 확대할 뿐 아니라, 많은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무·저작권 분야의 교육을 강화하여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한다.

□ 한편, 이날 과기정통부는 일산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내에 ‘1인 미디어 팩토리’를 구축하고, 1인 미디어 창작자들에게 촬영·편집공간과 공용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제공을 시작하였다.

-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의 소형 스튜디오와 편집실 등 일부*를 개방하여,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촬영하고 편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한다.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홈페이지(www.bitmaru.kr)의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하면 누구나 1인 미디어 팩토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빛마루 내 소형 오픈스튜디오 5개(1·3층), 공유사무공간·편집실(4층) 각 1곳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인 미디어 창작자 양성 지원센터와 1인 미디어 팩토리의 개소는 1인 미디어 전주기 지원정책을 체계화하는 첫걸음”이라며, “1인 미디어 분야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5G 시대 미디어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1인 미디어 창작자 양성 지원센터 관련 세부사항은 한국전파진흥협회 (renes2@rapa.or.kr, 02-317-6067), 1인 미디어 팩토리 사용관련 세부사항은 빛마루 방송지원센터(ksygo@kca.kr, 031-8073-0206)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체육시설 65개소에 스포츠 휠체어 170대 보급

- 국민이 직접 제안·심사·기획하는 '국민참여예산 사업' 으로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와 함께 전국 장애인 체육시설 65개소에 '다종목에 활용할 수 있는 스포츠 휠체어' 170대를 보급한다.

스포츠 휠체어는 장애인 체육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서, 휠체어 농구, 휠체어 탁구, 휠체어 럭비 등, 지체장애인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하는 데 꼭 필요한 용품이다. 그러나 종목에 따라 500~600만 원까지 육박하는 스포츠 휠체어의 높은 가격 때문에, 장애인 생활체육 영역에서 개인이나 장애인 체육시설이 자체적으로 스포츠 휠체어를 구입하기에는 부담이 매우 컸다.

특히 2018년에 시행한 장애인 생활체육실태조사 중 '운동 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질문에서도 '장애인용 운동용품 및 장비(13.6%)'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비용 지원(27.1%)', '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14.5%)'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

이에 문체부는 지역장애인체육회의 협조를 얻어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지난 4월과 8월에 일선 장애인 체육시설의 스포츠 휠체어 수요를 조사하고 다종목 스포츠 휠체어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역별 스포츠 휠체어 보급 계획>

시도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지원 대수	신청 시설수	13	5	9	5	10	2	10	2	5	1	19	6	5	2	2	1	7	6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4	2	16	7	30	6	10	4	7	7	10	3	8	3	5	3	170	65

다종목 스포츠 휠체어 사진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각 시·도장애인체육회는 2019년 10월 초부터 각 기관의 일정에 따라 시도별로 스포츠 휠체어 전달식을 개최한다. 또한 휠체어가 목적에 부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각 휠체어에 물품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주기적으로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혁신의 포용적 행정을 추구하는 스포츠 휠체어 보급 사업은 2018년 처음 시행된 기획재정부의 국민참여예산*으로 지원되며, 생활체육을 실제로 즐기는 국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기획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 이번 스포츠 휠체어 보급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스포츠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민이 직접 만든 사업과 예산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현장에 시급한 스포츠 휠체어를 보급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항상 국민이 원하는 바를 정책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연번	시도명	시설명	보급대수	비고
계			170	
1	서울 (5)	서부재활체육센터	3	
2		동천재활체육센터	3	
3		마포푸르메스포츠센터	3	
4		기쁜우리체육센터	2	
5		정립회관(체육센터)	2	
6	부산 (5)	서부산권장애인국민체육센터	3	
7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2	
8		부산한마음스포츠센터	2	
9		사직실내체육관	1	
10		부산 강서체육공원	1	
11	대구 (2)	대구광역시달구벌재활스포츠센터	5	
12		대구광역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	5	
13	인천 (2)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관	5	
14		인천광역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	5	
15	광주 (1)	광주광역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	5	
16	대전 (6)	대전광역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	6	
17		대전광역시서구건강체련관	2	
18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체육관)	2	
19		대전광역시립체육재활원	5	
20		동구아름다운복지관	2	
21		대전보훈병원(체육관)	2	
22	울산 (2)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관	3	
23		울산광역시제2장애인체육관	2	
24	세종 (1)	세종시민체육관	2	
25	경기 (6)	홀트장애인종합체육관	1	
26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1	
27		일산직업능력개발원(체육관)	1	
28		성남시한마음복지관스포츠센터	2	
29		안양시수리장애인복지관	1	
30		시흥시장래인형국민체육센터	1	

31	강원	원주드림체육관	1	
32	(2)	춘천장애인스포츠센터	3	
33	충북 (7)	충주시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3	
34		제천시어울림체육센터	5	
35		청주시장애인스포츠센터	2	
36		보은군장애인단체연합회관	2	
37		음성군실내체육관	1	
38		화랑관(진천군장애인체육회)	1	
39		괴산군국민체육센터	2	
40	충남 (6)	정심체육관	7	
41		천안시장장애인종합체육관	5	
42		홍성군장애인스포츠센터	7	
43		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	6	
44		계룡시민체육관	3	
45		삽교국민체육센터	2	
46	전북 (4)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체육관)	2	
47		정읍곰두리스포츠센터	2	
48		군산시장애인체육관	2	
49		전주어울림국민체육센터	4	
50	전남 (7)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체육관)	1	
51		여수시장장애인국민체육센터	1	
52		전남직업능력개발원(체육관)	1	
53		광양장애인국민체육센터	1	
54		나주종합스포츠파크	1	
55		해남군 다목적생활체육관	1	
56		순천팔마체육관	1	
57	경북 (3)	구미시장장애인체육관	5	
58		경주시장애인체육관	2	
59		안동체육관	3	
60	경남 (3)	창원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체육관)	2	
61		창원시립곰두리국민체육센터	4	
62		사천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	2	
63	제주 (3)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3	
64		제주북합체육관	1	
65		제주종합경기장연정정구장	1	

원산지 표시방법 및 위반업체 정보 이제는 실시간으로 확인!

- 10월 15일부터 원산지 표시 정착 및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제공 -

《 주 요 내 용 》

- ◆ 영업자와 소비자가 농식품 원산지 표시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에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 게시
 - PC와 스마트폰 앱에서 제품명, 원료명, 원산지 정보를 입력하면 원산지 표시방법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 제공
 - 질의응답집(Q&A), 홍보전단, 원산지 표시판 예시 등 참고자료 제공
- ◆ 소비자가 원산지 위반업체 공표내역을 스마트폰(www.naqs.go.kr/mobile)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
 - 내 주변·행정구역별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정보를 지도상에서 조회 가능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2019년 10월 15일 부터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를 개시하고,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위반업체 공표내역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는 원산지 대상품목 확대와 표시방법 변경으로 인한 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제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공하게 되었다.

- 종합 안내 서비스의 구성내용에는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 ‘질

의응답집’, ‘원산지 표시 홍보전단’, ‘원산지 표시판 예시’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참고자료를 제공한다.

-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에 접속하여 하단의 ‘원산지표시종합 안내’ 선택 후 쉽게 이용 가능

□ 특히,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를 스마트폰 앱과 PC에서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는 사용자가 농산물·가공식품·음식점 중에서 해당 분류를 선택한 후 제품(메뉴)명, 원료명·함량 및 원산지 정보를 입력하면 원산지 표시방법을 자동으로 안내해준다.

* 앱은 스마트폰 구글 ‘Play 스토어’에서 「농식품안심이 앱」을 다운로드해 설치

□ 또한, 농관원은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제 위반업체 공표 *내역을 모바일 누리집(홈페이지)으로 확대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내 주변과 행정구역별로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정보를 지도상에서 조회 가능하도록 하였다.

* 원산지 2회 이상 미표시 또는 거짓표시한 자에 대해 위반업체·품목·내용 등을 12개월 간 공표

- 스마트폰을 활용한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확인은 농관원 모바일 누리집(www.naqs.go.kr/mobile)에 접속하여 하단의 ‘원산지표시위반 공표’ 선택 후 확인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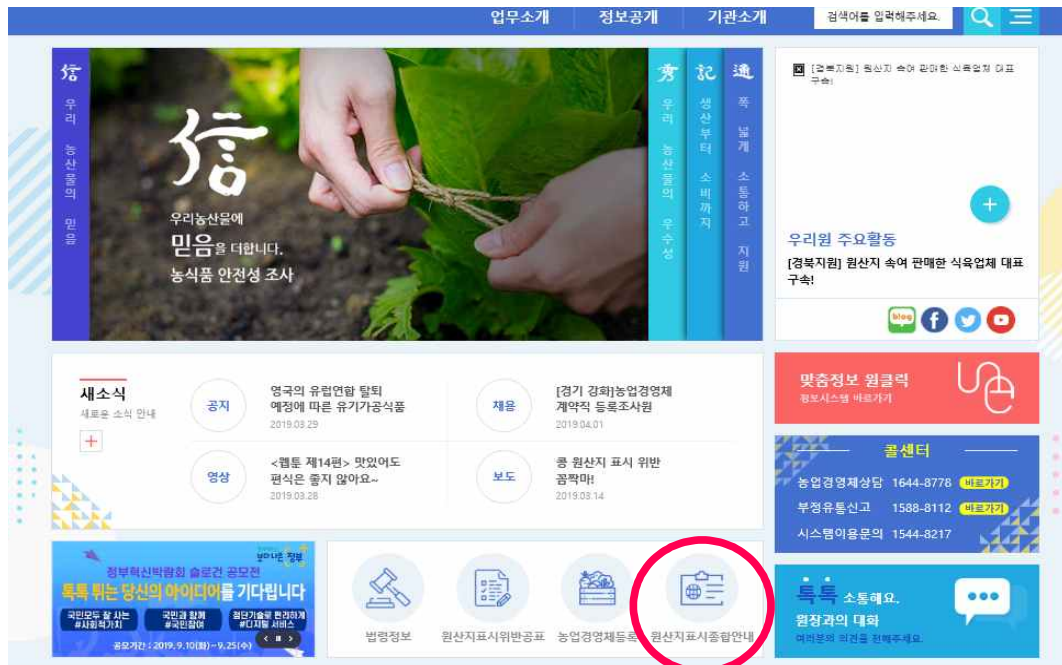
□ 농관원은 이번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 개시와 모바일 누리집 (홈페이지) 공표 확대를 통해 수요자 맞춤 정보제공과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아울러, 농관원 관계자는 영업자 및 소비자에게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의 많은 활용을 당부하였으며, 카드뉴스·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지하철 스크린, 홍보전단 배부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 구축 결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www.naqs.go.kr) ‘원산지표시종합 안내’ 바로가기 위치



-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 제공 화면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표시 안내
|
질의응답집
|
음식점 표시
|
농산물·가공품 표시
|
화웨이 표시
|
원산지 표시관 예시

▶ **농산물, 가공식품,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 받고자 하는 사항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사용자 매뉴얼은 여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가공식품

음식점

검색방법
 한 글자 입력 후 검색 또는 직접 입력 가능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051-400-5600)에 문의바랍니다.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는 원산지 안내용으로 개발되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제도 보완한다

-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체납 부담금 징수제도 보완 방안이 시행된다.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징수제도를 보완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6일 개정·공포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번에 개정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은 공공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정부혁신 과제와도 부합한다.
- 10월 17일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이전·말소등록 전에 체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 체납 부담금 납부 후 이전등록이 정착되면, 더욱 공정한 중고차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체납 부담금에 대한 징수제도 보완과 함께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함께 추진된다.

-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킴으로써 환경 개선부담금 일시납부 및 이에 따른 감면*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보다 많은 납부자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1월 일시납부 시 연 부과금액의 10% 감면, 3월 일시납부 시 약 5% 감면

-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 아울러, 국세 및 지방세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를 환경개선부담금에 도입하여, 청산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 부족한 징수금에 대해 납부의무자 이외의 제3자(비상장법인이 납부불능일 때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등)에게 보충적으로 납부의무 부과

** 공유물에 대하여는 미납분에 대해 모든 공유자가 공동으로 연대하여 납부

-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 개정을 통해 납부 편의 확대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고 부담금 납부의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붙임 1. 환경개선부담금 개요.
2. 질의응답. 끝.

☐ 도입 목적

- 안정적인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 확보
-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의 구현을 통한 환경오염 저감 유도

☐ 근거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 제도 연혁

시행일	주요 내용
'91.12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정·공포
'93.02	시설물에 최초 부과('92년 하반기분)
'94.03	경유자동차에 최초 부과('93년 하반기분)
'05.02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경유차 3년 면제,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차량 면제
'06.01	저공해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09.05	EURO-5 이상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15.07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채납액은 계속 징수)

☐ 부과대상 : 자동차관리법상 등록 경유자동차*(유로5·6, 저공해차량 등 제외)

* '17년말 기준 부과대상 435만대, '12.7 이후 신규 부과대상 없음

☐ '18년 부과·징수 현황

- (자동차+시설물) 부과 1조 979억원, 징수 4,236억원, 징수율 38.6%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1조 722억원 부과, 징수 4,222억원, 징수율 39.4%

* 대당 평균 260,620부과(현년도 부과액은 대당 평균 80,070원(25,280~719,140원))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추이>



- (향후 징수추이) 환경개선부담금은 2020년 3,255억원, 2025년 762억원으로 추정되며, 2030년도에 일몰될 것으로 분석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기준

- 부과 : 반기별로 매년 3월, 9월에 부과

* 1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1년분의 10% 감면, 3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상반기분의 10% 감면

- 부담금 산정식

(산정식*) 대당 기본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0조 제2항

(대당 기본부과금액) 기준부과금액*(20,250원)×부과금 산정지수**(2.037)

* 영세자영업자는 기준부과금액 15,190원

** 전년도 산정지수 × (1 + 물가상승률), ('17) 1.950 → ('18) 2.001 → ('19) 2.037

(오염유발계수)

엔진 총배기량(cc)	오염유발계수
2,000 이하	1.00
2,000 초과 2,500 이하	1.25
2,500 초과 3,500 이하	1.75
3,500 초과 6,500 이하	2.64
6,500 초과 10,000 이하	4.50
10,000 초과	5.00

(차령계수)

차령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차령계수	0.50	1.00	<u>1.04</u>	1.08	1.12	1.16

(지역계수)

지역별	인구 10만 미만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인구 100만 이상 500만 미만	인구 500만 이상
지역계수	0.40	0.85	0.87	1.00	1.53

⇒ '19년 대당 부과 금액 : 12,870~366,040원(반기), **25,740~732,080원(연)**

1.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현황은?

- 2018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1조 722억 원을 부과하였으나 4,222억 원이 징수됨으로서 징수율은 39.4%임
- 이는 누적 체납액(6,447억 원) 때문으로 '18년 당해연도 부과금은 4,275억 원으로 이중 81.5%인 3,485억 원이 징수됨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추이>



2.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는 이유는?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연간 약 435만 대나 되지만 부과액은 소액(대당 연평균 약 80,070원)이기 때문에 압류 후 공매 처분 등 강제집행이 곤란한 문제가 있음

3. 이전.말소등록 시 체납액 납부로 추가 징수 예상액은?

- 누적 미납액(6,044억원)의 10%(말소비율*)인 약 600억원 증가 예상

* 연간 노후 경유차 말소비율 = 말소 경유차(44만대) / 부과대상(435백만대) × 100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

- 8월 27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0월 1일(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8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 도입

- 현행 3~5일(최초 3일 유급)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월 1일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 또한 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 한편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된다.

- * (지급 요건) ①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것
 ②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일 것
 ③ 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급여 산정식) 월 통상임금(상한액 200만 원) ÷ 월 소정근로시간 x 일 소정근로시간 x 5일

□ 일부 대기업에서는 현재도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유급휴가 기간인 3일 전후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다.

* (배우자 출산휴가) 평균 사용일 수 3.6일, 300인 이상 기업의 평균 사용일 수 4.0일
(2017년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 부담 없이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은 10월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한다.

○ 따라서 9월 30일 이전에 청구기한(현행법상 출산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었거나 기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 단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가 모두 끝난 후(분할 사용 포함)에 일괄하여 신청해야 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그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하여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 그런데 10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 (사용 예시) 총 2년(육아휴직은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선택적 사용이 가능

육아휴직 12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개월	
육아휴직 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년			

□ 한편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실현된다.

- 현재는 1일 2~5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되며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 1시간 단축분(1주 5시간) 이상의 단축분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 유지(통상임금의 80%)

** (단축 후 근로시간) (현재) 주 15~30시간 → (개정) 주 15~35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기업 소속 노동자 모두에게 지급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는 10월 1일 이후 사용(분할 사용 포함)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하며, 9월 30일 이전에 기존 사용 기간(1년)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간 모성보호 및 일·생활 균형 제도 개선 내용과 주요 성과

□ 최근 초저출산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저출산대책(2018.7.5, 저출산위·관계부처 합동)> 등을 발표하고, 출산·육아기 노동자를 지

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 임신·출산기 여성 노동자의 모성 및 태아 보호를 위한 지원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액을 인상하고, 2019년 7월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도 출산급여를 지급했다.
- 육아기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였고, 맞돌봄 문화 조성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유인책(인센티브)을 대폭 강화했다.

□ 이러한 정부의 제도적 노력과 사회적 인식 변화에 힘입어 2019년 8월 기준 육아휴직자 수는 71,925명으로 2017년 8월 59,791명에 비해 약 20% 증가했다.

-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6년 7,616명에서 2018년 17,66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런 추세로 간다면 올 연말에는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2019년 8월 기준 14,988명)

□ 이밖에도 소득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했던 여성*에게 2019년 7월 1일부터 총 150만 원(50만원×3월분)의 출산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 (지원 대상) 1인 사업자, 특수 고용직,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고용보험 수급요건(180일) 미충족자 등

- 2019년 4월 2일 이후에 출산한 여성이 적용 대상으로 출산일부터 바로 신청 가능하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등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이용하여 신청하면 된다.

- **임서정 차관**은 “최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여성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켜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를 보다 보편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참고1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자주하는 질문

♣ 묻고 답하기 1

질문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적용시점은?
답변	○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및 신설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규정(고용보험법 제75조 등)은 2019.10.1.부터 시행 - 2019.10.1. 이후에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 -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출산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은 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노동자는 이 법 시행 이후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9.30. 이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사용 하였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노동자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음

♣ 묻고 답하기 2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 사용한 경우 급여 신청 방법은?
답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가 모두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하므로 분할 사용 시에도 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 일괄하여 신청해야 함

♣ 묻고 답하기 3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 3일을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답변	○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종료일은 출산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동 기간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함 * 다만,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로 볼 수 없어 고용보험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묻고 답하기 4

질문	노동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만 청구한 경우 나머지 일수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 개정 법률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을 부여토록 하고 있음. 만약 노동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만 청구한 경우,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동 휴가가 분할 사용 가능하며,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나머지 휴가기간 5일을 청구해야 함을 알려주어야 함

♣ 문고 답하기 1

질문	확대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시점은?
답변	○ 확대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은 2019.10.1.부터 시행 - 2019.10.1. 이후 육아휴직 등을 최초로 사용하는 노동자는 적용 - 2019.9.30. 이전 육아휴직 등을 분할하여 최초 사용한 경우는 2019.10.1. 이후 육아휴직 등의 잔여기간을 새로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개정 법률을 적용함(2019.9.30. 이전 이용기간 차감) → 단, 시행 전에 기존 법에 따라 육아휴직 등을 1년 기사용 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 9.30. 이전부터 육아휴직 등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사업주에게 분할 사용의 의사표시를 해야 함 ※ [예시] 2018.1.1.~2018.5.31. 육아휴직 5개월, 2019.1.1.~2019.5.31.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5개월을 분할 사용한 경우 : 10.1. 이후 육아휴직 등의 잔여기간을 새로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총 1년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적으로 사용가능(단,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이므로 7개월 이내)

♣ 문고 답하기 2

질문	근로자(임금 월 250만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근무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답변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04조의2)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산정방식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정함 ⇒ $\{(200\text{만원} \times 5/40) + (150\text{만원} \times ((40-20-5)/40))\} = 812,500\text{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계산식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60%; padding: 5px;"> ◆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X 금액(2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 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td> <td style="width: 40%; text-align: center; padding: 5px;"> $\frac{5}{\text{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td> </tr> <tr> <td style="width: 60%; padding: 5px;">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X에 해당하는 금액(150만 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 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td> <td style="width: 40%; text-align: center; padding: 5px;"> $\frac{\text{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text{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text{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td> </tr> </table>	◆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X 금액(2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 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frac{5}{\text{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X에 해당하는 금액(150만 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 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frac{\text{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text{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text{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X 금액(2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 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frac{5}{\text{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X에 해당하는 금액(150만 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 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frac{\text{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text{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text{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2015년 12월 이후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저출산대책(2018.7.5, 저출산위·관계부처 합동)> 등을 발표하고, 출산·육아기 노동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왔음

① 임신·출산기 여성 노동자의 모성 및 태아보호를 위한 지원제도 강화

-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한액을 인상* 및 난임치료휴가 신설(2018년 5월)

* (2016년) 135만 원 → (2017년) 150만 원 → (2018년) 160만 원 → (2019년) 180만 원

-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9년 7월부터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도 출산급여 지급

② 육아기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

- 2017년 9월 첫 3개월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 2배 인상(통상임금 40→80%) 및 급여 상한액 인상(100→150만 원)

- 2019년 1월 3개월 이후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 40→50%) 및 상한액 인상(100→120만 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통상임금 40→80%)

③ 맞돌봄 문화 조성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인센티브 대폭 강화

- 2017년 7월 이후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지속적으로 인상*

* 2017년 7월 둘째 이상 자녀 상한액 인상(150→200만 원) → 2018년 7월 첫째 자녀 상한액 인상(150→200만 원) → 2019년 1월 모든 자녀에 대한 상한액 인상(200→250만 원)

- 이러한 정부의 제도적 노력과 사회적 인식 변화에 힘입어 2019년 8월 기준 육아휴직자 수는 71,925명으로 2017년 8월 59,791명에 비해 약 20% 증가하였음
-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6년 7,616명에서 2018년 17,66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런 추세로 간다면 올 연말에는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2019년 8월 기준 14,988명)

모성보호 정부지원제도

우리가족을 위한 지원이
'이~만큼 커졌어요!아이가
태어날 때

1 출산전후 휴가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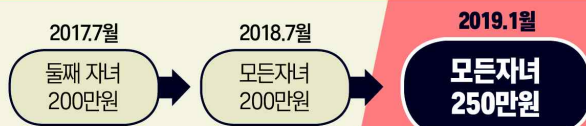
2 배우자 출산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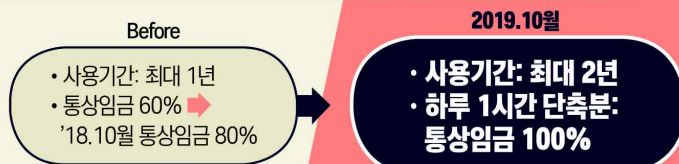
3 육아휴직 급여

아이가
자라날 때

4 두번째 육아휴직자 인센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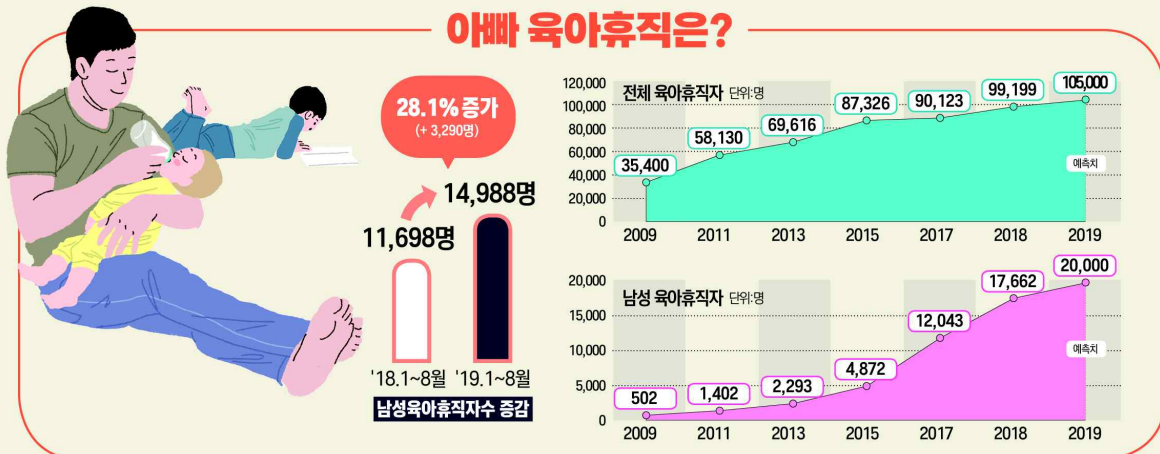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모성보호 정부지원제도

정책을 사용하는 사람이
이~만큼 늘어났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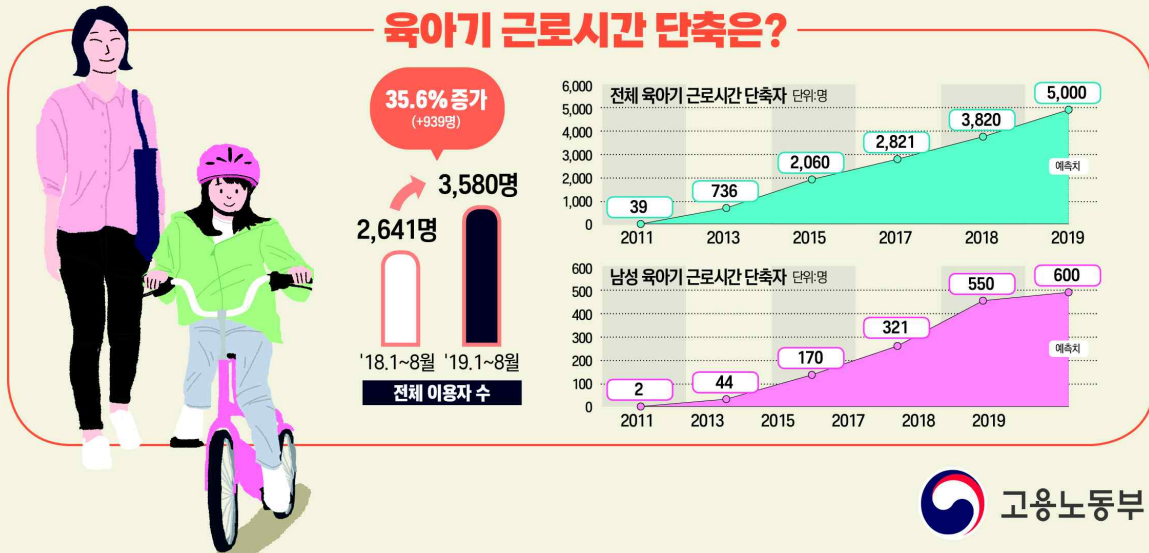
아빠 육아휴직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참고6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요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현행 3~5일(최초 3일 유급)을 유급 10일*로 확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노동자에게 5일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 청구 시기를 출산한 날로부터 30일→90일 이내로 확대

* 같은 날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연계 법안

↳ (주요내용)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노동자 5일 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사용 기간	3~5일(유급 3일+무급 2일)	유급 10일
정부 지원	없음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 5일분, 통상임금 100% 지원
청구 시기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분할 사용	원칙적 불가(노사합의 시 가능)	1회 분할 사용 허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사용 기간을 최대 1→2년으로 확대* 및 일 1시간 근로시간 단축 허용*, 분할 사용 횟수 확대(최소 3개월 단위)

* 일 1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통상임금의 80→100%)

구분	현 행	개 선 안
단축 시간	일 2~5시간(주 10~25시간)	일 1~5시간(주 5~25시간)
정부 지원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50만 원) x 근로시간 단축 비율	· (일 1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만 원) x 근로시간 단축 비율 · (나머지 단축분) 현행 수준 유지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대기업 노동자 모두 지원
사용 기간	육아휴직 + 근로시간 단축 = 최대 1년	육아휴직 최대 1년 + 근로시간 단축 = 2년 *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상 가능
분할 사용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1회 허용	· (육아휴직) 1회 분할 사용 허용 · (근로시간 단축) 최소 3개월 단위로 자유롭게 분할 사용 가능 (분할 사용 횟수 제한 없음)

□ 추진 배경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는 출산전후 휴가와 그에 따른 휴가 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여성은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 지대에 놓임
- 이에 소득 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 후 소득 단절에 대한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것임

* 국정 과제 및 저출산 대책(2018. 7. 5.)의 핵심 과제로 추진

□ 제도 내용

- (지원 대상)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1인 사업자, 특수 고용직,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노동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노동자

- (지원 수준) 총 150만 원 지급(월 50만 원×3월분)

- (시행 시기) 2019. 7. 1.부터 신청 및 접수

* 4월 2일 이후 출산한 여성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

*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 (신청 방법)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시기) 출산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급 결정 및 지급)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결정 통지 및 본인 계좌 입금



**1인 사업자, 프리랜서
엄마라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열심히 일 해온 엄마라면
출산급여를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 (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수급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자의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

지원내용 총 150만원 (월 50만원 X 3월분)

•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일정금액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로 문의하세요.



**내내가
출산한
아빠라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챙기세요!**

19. 10. 1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로
늘어납니다**

**출산급여
챙기세요!**

행복한가족 행복한국
고용노동부



**1인 사업자, 프리랜서
엄마라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열심히 일 해온 엄마라면
출산급여를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 (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수급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자의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

지원내용 총 150만원 (월 50만원 X 3월분)

•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일정금액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로 문의하세요.



가족을 위해 신경하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에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로 문의하세요.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시기 출산일~출산후 1년 이내에 1번만 신청

제출서류 ① 출산급여 신청서
② 소득활동 증명서류
③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시기 배우자출산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분할 사용 시 휴가 종료 후 일괄 신청)

제출서류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② 배우자출산휴가 확인서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자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제출서류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자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인 근로자

지원내용 하루 1시간 단축분(주 5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의 급여가, 나머지 단축분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의 급여가 근로시간 단축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 10월 1일 부터는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보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최대 2년 까지 가능합니다.
• 10월 1일 부터는 하루 1시간 단축(주 근로시간 15~35시간)도 가능합니다.



**내내가
출산한
아빠라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배우자가 출산했다면
아빠도 10일로 늘어난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배우자가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지원내용 유급 5일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 (휴가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월 상한 200만원)

신청기한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신청)

• 10월 1일 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10일로 확대되며, 청구기한도 90일로 늘어납니다.
• 휴가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력 잇기에 노력하는 당신, 우리 모두가 응원합니다.”

- 도서벽지 거주 주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특별 실시 -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경력단절 예방주간(10. 14~10. 20)을 운영하고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와 함께 ‘윙크(W-ink) 캠페인’을 전개한다.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19년 9월 현재 158개소 운영)

W-ink 의미	(브랜드) ‘여성(Woman)’과 ‘일(Work)’의 ‘W’와 ‘잇다(Link)’의 ‘ink’를 조합한 말로 ‘18년 대국민 공모를 통해 경력단절 예방 캠페인 홍보 브랜드로 선정 (디자인)  는 여성의 경력 잇기에 노력하고 응원을 아끼지 않는 우리사회에 미소 가득한 눈인사(윙크)로 고마움을 전하는 여성의 모습 표현
-------------	--

- ‘경력단절 예방주간’은 일하는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경력단절이 없는 사회를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2018년도에 처음 마련됐다.

* 경력단절 예방주간 : 전국 새일센터가 공동으로 10월 중 한 주간을 정하여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온·오프라인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집중 실시

-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16년)에 의하면, 취업 여성들은 경력단절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육아휴직이 가능한 조직문화’(51.8%), ‘직장 보육 시설 확충(37.2%)을 꼽았는데, 이는 경력단절 후에 일자리를 찾아주는 정책보다 경력단절을 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7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통계

□ 올해는 경력단절 예방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사전행사로 10월 12일(토) 신도림 디큐브시티광장(서울 구로구 소재)에서 ‘여성의 경력 언제나 링크(W-ink)’ 캠페인을 연다.

○ 이번 행사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경력단절예방 공감퀴즈’, ‘토크콘서트(이야기 공연)’, ‘뮤지컬 공연(음악 공연)’ 등으로 구성하고, 초등학생·고등학생·대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플래시 몹’**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다.

* 서울난향초, 서울방송고 연극전공, 서울여대 댄스동아리 TIPSSY

** 플래시 몹(Flash Mob) : 불특정 다수인이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 모여 주어진 행동을 하고 곧바로 흩어지는 일

○ ‘토크콘서트(이야기 공연)’에는 ‘언니들의 슬기로운 조직생활(언슬조)’ 팟캐스터, 오찬호 작가, 김미진 사회적 벤처기업 ‘위커넥트’ 대표가 참여해 ‘가정일과 직장일의 균형으로 행복한 우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뮤지컬공연(음악 공연)’은 노래와 연기로 결혼과 직장, 육아로 인해 개인과 가정에서 겪는 이야기를 전달한다.

□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정책 홍보부스, 가족공예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부스* 등을 운영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캠페인 동참 서명과 인증 사진을 게시하면 추첨으로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 3D펜을 활용한 키트 만들기, 핑퐁로봇 조립체험, 가족공예, 디퓨저 만들기 등

○ 이 밖에도, 각 새일센터에서는 경력단절예방 특강, 취업자 간담회, 여성채용박람회, 거리 캠페인 등 41개의 다양한 행사를 경력단절 예방주간(10.14.~10.20.)에 맞추어 진행한다.

□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사전에 경력단절을 선택하지 않도록 2017년부터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을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 재직여성의 고용 유지를 위한 고충·노무 상담 등 전문 상담을 실시하고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인사·노무상담, 근로 환경 개선(여성휴게실, 수유실, 탈의실 설치 등)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아울러, 올해 35개소 새일센터에서 운영 중인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내년도에는 더욱 확대할 예정이며, 이번 경력단절 예방주간을 통해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18년 경력단절 예방서비스 참여인원 : 개인, 기업 등 약 1만 6천여 명

<새일센터 경력단절예방 지원 사례>

- A사는 최근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도 및 연차 유급 휴가제도에 대해 회사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어려워하며 여성근로자들의 장기근속유도를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해 고민함. 새일센터 직장문화 개선 컨설팅을 통해 법 개정에 따른 노무관리방안을 컨설팅받고, 여성 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위한 유연근무시간제 도입과 복리후생제도를 마련하기로 함
<새일센터 이용기업 A사 사례>

- 출산 후 양육 스트레스와 경력단절에 대한 불안감으로 심각한 무기력을 호소한 B씨는 심리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무기력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었으며, 현재 자신에게 맞는 미래계획을 세우고 진로를 구체화하기 위해 직업관련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참여하기로 함
<새일센터 구직자 B씨 사례>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임신·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이 더 이상 혼자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라고 강조하며

- “이번 예방주간을 계기로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피할 수 있게 배려하고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기를 희망 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경력단절 예방주간 개요

2. ‘여성의 경력 언제나 윈크(W-ink)’ 행사 개최계획(안)

□ 추진배경

-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8년부터 10월중 1주일을 지정하여 경력단절 예방주간 운영
-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가정·기업·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새일센터 공동 링크(W-link)* 캠페인 전개

W-link	(브랜드) '여성(Woman)'과 '일(Work)'의 'W'와 '잇다(Link)'의 'ink'를 조합한 말로 '18년 대국민 공모를 통해 경력단절 예방 캠페인 홍보 브랜드로 선정
의미	(디자인)  는 여성의 경력 잇기에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우리사회에 미소 가득한 눈인사(링크)로 고마움을 전하는 여성의 모습 표현

□ 2018년도 추진 성과

- (인식개선) 경력단절 예방지원 서비스를 통해 직장적응·복귀지원 등 전문상담 1만 7백여 명, 직장문화개선 서비스에 3천 6백여 명이 참여하는 등 개인 및 기업 등 총 1만 6천여 명 지원

- (홍보·캠페인) 경력단절예방 브랜드(W-link) 개발 및 캠페인 음악 제작, UCC 공모전 및 홍보영상 배포 등을 통해 대국민 관심도 제고

* 공모전 영상(11건)을 SNS, 블로그, 카페로 공유. 페이스북, 블로그 합산 490회 이상 영상 공유·확산, 15,000명 이상 좋아요, 200건 이상의 긍정적 댓글 반응

□ 2019년도 추진 내용

- '여성의 경력 언제나 링크(Wink)' 행사 개최(10.12(토) / 신도림 디큐브시티 광장)
 - (참석대상) 여성가족부 장관, 기업 관계자, 참여 시민 등 200여 명
 - (프로그램) 토크쇼, 뮤지컬, 퀴즈대회, 합창공연, 플래쉬 몹 등
 - (전시·체험) 정책 홍보부스, 체험부스, 포토존, 이벤트존 등
- 경력단절예방주간 운영(10.14(월)~10.20(일) / 여가부·지자체·새일센터)
 - (홍보·캠페인) 라디오 캠페인, 지하철 광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한 홍보 및 온라인 이벤트 실시
 - (지역별 행사) 경력단절예방 특강, 간담회, 채용박람회 등 41개 행사 개최

- ☐ 일 시 : '19.10.12. (토) 14:00~18:00
- ☐ 장 소 : 신도림 디큐브시티광장(서울 구로구 소재)
- ☐ 참석대상 : 여성가족부, 기업 관계자, 센터 종사자, 시민 등 200여 명
- ☐ 주 최 : 여성가족부
- * 주관기관 : 서울광역새일센터, 중앙새일지원센터
- ☐ 후원기관 : 신한희망재단, 베이비본죽
- ☐ 주요 행사일정(안)

시간	세부 프로그램	장소
14:00~14:40 ('40)	- 합창공연(구로여성합창단) - 플래시 몐(1차)	신도림 디큐브시티 광장(야외)
14:40~15:30 ('50)	시민들과 함께하는 경력단절예방 공감퀴즈	
15:30~16:20 ('50)	- 토크콘서트 <슬기로운 11> * 언슬조 팟캐스터 3인, 오찬호 작사, 김미진 기업대표 등	
16:20~16:40 ('20)	- 음악공연(가요, 팝) * 라스텔라 3인 - 플래시 몐(2차)	
16:40~17:10 ('30) (공식행사)	- 장관님 인사말 - 경력단절예방 캠페인 국민 참여 영상 소개 -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경력단절예방 퍼포먼스 - 기념촬영 등	
17:10~18:00 ('50)	- 뮤지컬공연 <비커밍 맘> * 세일링드림 배우 6인	
14:00~18:00	(포토존) 캠페인지지 인증샷 찍기 (카페) W-ink 카페(커피, 음료수 제공) (홍보부스) 새일센터 경력단절 예방정책 홍보 (체험부스) 새일센터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 3D펜을 활용한 키트 만들기, 핑퐁로봇 조립, 가죽공예 체험, 디퓨저 만들기 등	

도로 안전성 제고를 위해 전국 모든 도로 일제 점검·보수한다

- 도로포장, 안전시설, 도로표지 등 일제 정비 -

- 이달 말 까지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도로법상 모든 도로*에 대해 점검·보수하는 추계 도로정비가 실시된다.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군도·구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다가오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하여 제설자재 및 장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 주요 정비사항은 ① 노면 홈(포트홀), 바퀴자국 패임, 맨홀단차 등 도로포장 보수 ② 교량·터널 결함부위 점검·보수, ③ 배수관 등에 쌓인 퇴적토 제거 ④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교체·보수 ⑤ 차선 재도색 ⑥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된 도로표지 정비 등이다.

- 아울러 도로변 각종 잡초 제거·청소, 상습 무단투기 구간에 쓰레기 수거함 설치, 투기금지 안내표지 설치 등 도로경관 개선 작업을 실시하고, 도로점용 만료 후 원상복구 미비구간 정비 등 불법점용 시설 일제 정비도 실시한다.

- 이번 추계 도로정비는 「도로법」제23조, 제50조 등에 따라 각 도로관리청별로 자체도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된다.

(단위 : km)

구분	계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국지도포함)	시도	군도	구도
도로연장	110,714	4,767	13,983	4,905	18,075	30,028	22,786	16,170
정비책임	-	한국도로공사사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지자체)	특별시·광역시장	도지사 (시구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 일반국도 중 위임국도구간은 관할 도지사, 시·군 내 구간은 관할 시장이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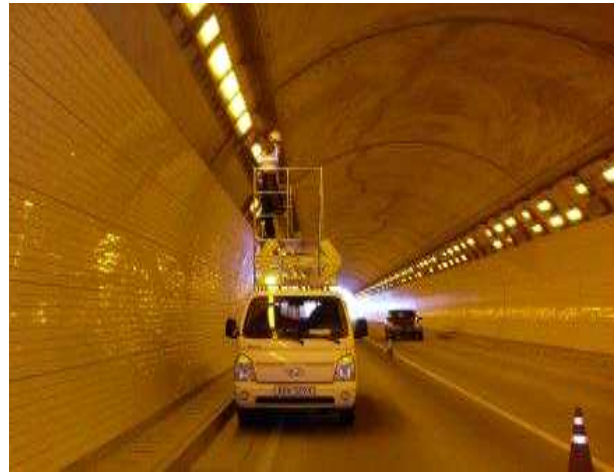
-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도로정비 현황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해 미비점에 대해서는 추가정비를 요청하고, 우수기관 및 우수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각 도로관리청과 공유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추계 도로정비는 노면 홈 보수, 비탈면 정비 등 국민안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포트홀 보수



▲ 터널점검 및 조명교체



▲ 배수로 청소



▲ 가드레일 보수



▲ 불법 현수막 철거



▲ 도로표지 정비

해수부, 태풍 '링링' 피해 어가 경영안정 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24억 원 배정, 수협에서 대출신청 가능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4억 원을 수협은행에 배정하였다.

올해 태풍 '링링'으로 어선, 어구 및 양식장 어류의 폐사 등 어업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의 피해 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태풍 '링링'으로 인해 어업피해를 입고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어업인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금액의 자기부담액 범위 이내에서 최대 2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고정금리(1.8%)와 변동금리(2019년 10월 기준 1.37%)*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2019년 10월 8일(화)부터 12월 6일(금)까지 수협 영업점을 방문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대출기간은 1년이다.

* 변동금리는 수협은행 고시금리로 하며 매월 변경하여 적용

- 어선, 어구 등 피해
 - 6천만 원 미만(어선 40톤 미만) : 보조 35%, 융자 55%, 자부담 10%,
 - 6천만 원 이상(어선 40톤 이상) : 융자 70%, 자부담 30%
- 양식시설, 양식수산물 피해
 - 양식시설 : 보조 35%, 융자 55%, 자부담 10%
 - 양식수산물 :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

권준영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이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고수온 등 다른 재해에 대해서도 복구계획이 확정되는대로 신속하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